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용

1.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성명 (한자)	직위	주민등록 번호	선임일	임기 (만료일)	업무범위	겸직 직위 및 업무	주요경력 ¹⁾	자격요건 확인결과
봉원석 (奉原鍾)	전무	651204- 1025916	2016.10.26	2년 (2018.10.25)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중 발생하는 위험 관리	CRO	(2014.01 ~ 현재) 미래에셋증권 CRO (2005.05 ~ 현재) 미래에셋증권 (1999.08 ~ 2005.04) LG투자증권 (1991.01 ~ 1993.01) 한국산업은행 (1997.09 ~ 1999.06) George Washington MBA (1984.03 ~ 1990.02)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이상없음

주1) 주요 경력란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학력 또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과 최근 5년간의 근무경력을 연월 단위로 기재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

성명 (한자)	봉원석 (奉原錡)	직위	전무	직전 근무처 및 직위	미래에셋 증권 CRO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별지 제1호서식 불임2 참조)		해당사항 없음						
2. 법 제28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		해당사항 없음						
3.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8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해당사항 없음						
4.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상기인의 심사 결과 임원 선임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조웅기 ((인))								

【첨부서류】

- 이사회 결의서
-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및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 금치산자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화보서 등)
-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법 제2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
- 외국인의 경우 금융법규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임원 자격요건 확인서

성명	봉원석	주민등록번호	651204_1025916
----	-----	--------	----------------

심사항목(결격사유)	해당여부
1. 미성년자·폐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해당사항없음

심사항목(결격사유)	해당여부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없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사항없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 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본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2016년 10월 26일

미래에셋증권 소속 : CRO

직급 : 전무

성명 : 봉원

(일)